

#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 절차

## 1. 일반사항

- 가. 부가가치의 개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의 정의
-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

$$\text{납부세액(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기술이전수익) 등에 대하여만 이루어짐

## 2. 과제별 부가세 적용 범위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2014.1.1.일 이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위탁과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나. 부가세 적용 범위

구분	산단이 제공하는 용역		상세구분	부가가치세법	비고
	구분	용역의 종류			
연구용역	대가성 없음	결과물의 소유권이 본교에 귀속		면세 (계산서 발행)	
	대가성 있음	결과물의 소유권이 타 기관(주관, 지원기관)에 귀속 · 국가R&D과제 위탁과제 · 국가용역과제, 민간과제 등	새로운 학술, 기술개발  그외	면세 (계산서 발행)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예외 <sup>1)</sup>
기타용역	대가성 있음	자문,설계, 디자인등(산업자문 등)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육용역	대가성 있음	산학협력에 관련된 수탁교육 등 (외부인 대상 교육)		면세 (계산서 발행)	
	대가성 없음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않는 교육 운영수익 (재학생 대상 교육)		면세 (발행의무 없음)	

$$\text{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직접비+간접비)의 10\% 계상}$$

- 1) 예외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부 연구용역에 면세적용)
  - ※ 면세적용 연구용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3. 과세과제 연구비 청구 및 정산 방법

- 가. 연구비 직접비 사용 시에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집행 및 정산
- 나. 매분기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를 신고하여 해당 과제의 지출된 비목으로 환입처리
- 다. 연구비 정산금액은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를 제외한 **실 집행액(공급가액)으로 정산**
- 라. 정산보고 후 연구비 잔액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원기관에 반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메뉴얼 부당집행기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는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 대상에 포함

라. 매입공제구분

과세과제	영수증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카드전표(법인카드)	공제
공제요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전부 명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불공제	사업과 직접 연관성 X	연구비 지출이므로 모두 연관성 있다고 봄(없으면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접대비 및 이와 비슷한 비용		
	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	
	비영업용(1,000CC이상)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관리비	유류대, 수선비, 주차료 포함 ※렌터카 공제	
	면세사업	미가공 식료품, 농수축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을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및 수의사 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 전세버스만 공제 도서, 도서대여, 신문, 잡지, 관보(광고는 과세) 우표, 인지, 증지 금융, 보험용역 토지 저술가, 작곡가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술창작품, 예술/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입장료	
기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법시행령 제73조)	미용, 욕탕 기타 유사서비스 여객운송업(전세버스는 공제가능) 입장권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동물진료용역		

- ※ 상품권(유가증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등기요금은 면세(택배요금은 공제)
- ※ 항공기,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 ※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 발취(개정)에 따라 혹은 매입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정보 확인 후 적용)

- 단, 연구비카드사용신청내역에 부가가치세가 0원인 경우, 일반과세자(\*)여부확인 후 청구

(\*)일반과세자여부확인: 홈택스(hometax.go.kr)-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조회

##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분기별 청구 기한

가. 신고기한

1) 1기 예정신고(1.1.~3.31.) 신고기한: **4. 25.**

(원칙)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일 **1.1.~3.31.** ⇒ 카드청구 및 지출 **4/10 까지 완료**  
 (예외) 지출일이 4/10이 지난 경우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가능  
 ⇒ **최대 지출기한은 7/10까지**

2) 2기 확정신고(4.1.~6.30.) 신고기한: **7. 25.**

(원칙)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일 **4.1~6.30** ⇒ 카드청구 및 지출 **7/10 까지 완료**  
 (예외) 지출일이 7/10이 지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연구자부담(개인 입금처리)**  
 ⇒ **최대 지출기한은 7/10까지**

3) 3기 예정신고(7.1.~9.30.) 신고기한: **10. 25.**

(원칙)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일 **7.1~9.30** ⇒ 카드청구 및 지출 **10/10 까지 완료**  
 (예외) 지출일이 10/10이 지난 경우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가능  
 ⇒ **최대 지출기한은 익년 1/10까지**

4) 4기 확정신고(10.1.~12.30.) 신고기한: **익년 1. 25.**

(원칙)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일 **10.1~12.31** ⇒ 카드청구 및 지출 익년 **1/10 까지 완료**  
 (예외) 지출일이 익년 1/10이 지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연구자부담(개인 입금처리)**  
 ⇒ **최대 지출기한은 익년 1/10까지**

나. 기타고려사항

- 1)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 2) 승인 취소된 카드사용건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예정·확정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수정 신고 대상이며 가산세가 부과되니 분기별로 승인취소 된 건에 대한 확인 필수
- 3) 과세과제 카드 이외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개인카드 사용한 경우: **개인명의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불공제처리 하므로** 지출 시, 공급가액만 청구하고 부가세는 **연구자부담(개인 입금처리)**

**[과세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예규]**

**[서면3팀-1912,2007.7.5.]**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종업원 또는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